

## 전북콘텐츠기업지원센터

# 2024 융복합 콘텐츠 제작지원사업 모집공고문

(재)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 전북콘텐츠기업지원센터에서는 「2024 융복합 콘텐츠 제작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4. 3. 18.

(재)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장

### 1

## 사업개요

- 사업명: 2024 융복합 콘텐츠 제작지원사업
- 사업목적: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춘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 지원
- 사업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 2024. 11. 30.
- 지원내용

구분	융합형	융합상생형	
1	접수기간	'24. 3. 18.(월) ~ '24. 4. 1.(월) 16:00까지	
2	지원대상	- 자체 융복합 콘텐츠 기획 및 제작이 가능한 도내·외 콘텐츠 기업 - 공고일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3명 이상 (과제 개발 관련 전문인력 2명 이상) ※ 도외 기업의 경우 협약 이후 2개월 이내 본사 이전 필수	- 도내 기업 2개사 이상 컨소시엄을 통한 콘텐츠 기획 및 제작 - 공고일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3명 이상(과제 개발 관련 전문인력 2명 이상) ※ 주관기업/참여기업 설정 필수 ※ 주관기업 참여율 50% 이상 설정
3	지원규모	3개 과제 (과제당 최대 100백만원)	1개 과제 (과제당 최대 180백만원)
4	지원내용	- 콘텐츠 제작 직접비 지원(인건비, 운영비, 용역비 등)	
5	지원조건	상용화	- 협약기간 내 콘텐츠 제작을 완료하며 '24년 12월 이내 상용화
	신규고용	- 과제당 2명 이상 신규고용 必	- 과제당 3명 이상 신규고용 必
	자부담금	- 지원금의 10% 이상 자부담금(현금) 편성 의무	- 지원금의 10% 이상 자부담금(현금) 편성 의무(참여율에 따른 자부담금 편성)
6	유의사항	- 우리원이 주관한 "2023 융복합 콘텐츠 제작지원사업" 선정기업의 참가는 불가 - 23년도 전북콘텐츠기업지원센터 및 전북콘텐츠코리아랩 참여 기업 가산점 부여	

## 2

# 지원내용

### ○ 지원개요

구분	세부내용																					
	융합형	융합상생형																				
지원 자격	규 모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에 해당하는 기업																				
	지 원 대 상	- 자체 융복합 콘텐츠 기획 및 제작 -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가 3명 이상 - 과제 전문인력 2명 이상 보유 ※ 위 사항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함	- 컨소시엄을 통한 콘텐츠 기획 및 제작 -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가 3명 이상 - 과제 전문인력 2명 이상 보유 ※ 위 사항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함 ※ 주관 및 참여기업에 공통 적용																			
		[도내기업] - 도내 사업장 소재지 콘텐츠 기업(본사) - 도내기업 지사는 지원 불가 - 협약 종료 후 1년 이상 전복 사업장 유지 [도외기업] - 도외 사업장 소재지 콘텐츠 기업 - 협약 후 2개월 이내 전복 본사 이전 필수 - 협약 종료 후 2년 이상 전복 사업장 유지	[주관기업] - 6개월 이상 도내 사업장을 유지한 기업 - 주관기업은 영리법인에 한함 - 주관기업 참여율 50% 이상 설정 - 참여율에 따른 자부담금 편성 - 6개월 이상 도내 사업장을 유지한 기업 [참여기업] - 6개월 이상 도내 사업장을 유지한 기업																			
	지 원 예 시	- 하위 <콘텐츠 산업분야>를 활용	- 하위 <콘텐츠 산업분야> 간 결합을 통한 제작 (예시) 콘텐츠 플랫폼 내 AI 서비스 삽입 등																			
	업 종	- 사업자등록증상 지원분야에 적합한 업태(종목)가 등록된 콘텐츠기업 또는 콘텐츠산업으로 사업 영역 확장 목적을 가진 기업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thead> <tr> <th colspan="4">&lt;콘텐츠 산업분야&gt;</th> </tr> </thead> <tbody> <tr> <td>캐릭터</td> <td>캐릭터 개발 및 라이선스업 등</td> <td>영상</td> <td>영상 기획 및 제작 등</td> </tr> <tr> <td>만화</td> <td>인터넷/모바일 만화 콘텐츠 제작 등</td> <td>지식정보</td> <td>e-러닝업, 에듀테인먼트 제작 등</td> </tr> <tr> <td>애니메이션</td> <td>애니메이션 창작제작업 등</td> <td>콘텐츠 솔루션</td> <td>저작물, 모바일솔루션, CG 등</td> </tr> <tr> <td>실감 콘텐츠</td> <td>MR/VR 홀로그래픽 등</td> <td>공연</td> <td>공연기획 및 연출 등</td> </tr> </tbody> </table> <p>※ 상기 분야 이외의 경우 사전문의 후 신청(게임 및 단순 예술 및 창작 분야 지원 불가)</p>			<콘텐츠 산업분야>				캐릭터	캐릭터 개발 및 라이선스업 등	영상	영상 기획 및 제작 등	만화	인터넷/모바일 만화 콘텐츠 제작 등	지식정보	e-러닝업, 에듀테인먼트 제작 등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 창작제작업 등	콘텐츠 솔루션	저작물, 모바일솔루션, CG 등	실감 콘텐츠	MR/VR 홀로그래픽 등	공연	공연기획 및 연출 등
<콘텐츠 산업분야>																						
캐릭터	캐릭터 개발 및 라이선스업 등	영상	영상 기획 및 제작 등																			
만화	인터넷/모바일 만화 콘텐츠 제작 등	지식정보	e-러닝업, 에듀테인먼트 제작 등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 창작제작업 등	콘텐츠 솔루션	저작물, 모바일솔루션, CG 등																			
실감 콘텐츠	MR/VR 홀로그래픽 등	공연	공연기획 및 연출 등																			
공 통	- 진흥원 콘텐츠지원사업 관리규칙 제40조제1항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2023 융복합 콘텐츠 제작지원사업 선정기업은 신청 불가																					
지원 조건	- 융합형, 융합상생형 분야별 다른 과제로 중복 신청은 가능하나, 사업 선정 시 중복 지원 불가																					
	- IP(지식재산권) 사용시 사용계약서, 가산점 적용시 확인증명서 등 관련 증빙 제출																					
	개발 기간	- 협약기간(협약일 ~ 2024. 11. 30.) 내 콘텐츠 제작을 완료하며, 상용화, 서비스 런칭 필수																				
	자부 담금	- 지원금의 10% 이상 자부담금(현금) 편성 의무 - 지자체 보조금(지방비) 매칭 불가(지자체 보조금을 사업비에 직접 편성할 수 없음) ※ 자부담금 비율은 평가지표에 반영되지 않음	- 참여율에 비례한 자부담금 설정																			
	고용 창출	- 신규인력 2명 이상의 고용 必 (3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신규인력 3명 필수 고용 必 (3개월 이상 고용 유지)																			
보증 보험	- 확정된 지원금에 대한 이행(지급)보증보험 발행																					
가 점 사 항	- 하위 가점사항 항목에 해당하는 콘텐츠 기업 ※ 가산점은 하위 항목당 1점, 최대 3점까지 반영(항목별 중복 가능) / 담당자에게 요청하여 확인증명서 발급 必 ※ 전복콘텐츠기업지원센터, 전복콘텐츠코리아랩지원사업은 23년도에 한하여 인정																					
	<b>항 목</b>																					
	ESG (최대 1점)	-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군 단위 기업 또는 공고일 이전 1명 이상 채용을 진행한 기업																				
	전복콘텐츠기업지원센터 (최대 1점)	- 콘텐츠 엑셀러레이팅 지원사업 - 콘텐츠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 - 국외 콘텐츠 판로개척 지원사업 - 콘텐츠 맞춤형 인턴십 지원사업 - 콘텐츠 맞춤형 일자리 연계사업																				
전복콘텐츠코리아랩 (최대 1점)	- 콘텐츠 창작 랩 제작지원 - 콘텐츠 창업 랩 제작지원																					

## ○ 자격제한대상

### <진흥원 지원 제한사항>

- 진흥원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 사실이 있는 주관기업과 참여기업, 대표자 및 책임자
- 신청일 현재, 5천만원 이상의 과제가 연 2회 이상일 경우
  - 당해년도 보조(지원)사업에 지원 불가
- 신청일 현재, 우리원에서 1.5억원 이상의 과제를 3년 연속으로 수행한 경우
  - 향후 1년간 보조(지원)사업에 지원 불가
- 신청일 현재, 우리원에서 2년간 수혜받은 보조금(지원금)의 총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한 경우
  - 향후 2년간 보조(지원)사업에 지원 불가
- ※ 상기 제한사항 외에도 지원업체 참여제한 체크리스트 항목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사업안내서 서식 7 참조)

## ○ 추진절차 및 일정

구분	내용	시기	
		융합형	융합상생형
사업공고/접수	- 모집공고 및 e나라도움 신청접수 · 사전 서류 및 적합성 검토	3. 18.(월) ~ 4. 1.(월) 16:00까지	
서류평가	- 서류평가 · 모집 수에 따라 평가일정 및 방식 변경될 수 있음	4. 3.(수)	
선정평가	- 발표평가 - 선정기업 예산적정성 검토 및 예산확정 · 모집 수에 따라 평가일정 및 방식 변경될 수 있음	4. 17.(수)	
현장점검	- 선정기업 소재지 실태점검 등	4월 중	
협약체결	- 과제협약 및 1차 지원금 교부(70%)	5. 1.(수)	
중간평가	- 과제 수행 추진율 중간점검(현장점검 동반) - 평가결과에 따른 2차 지원금 교부(30%)	8월 중	
결과평가	- 콘텐츠 결과물 시연 등 최종평가	11월 중	
사업정산	- 정산/실적보고서 및 회계검토보고서 제출 - 정산잔액 및 이자 반납	12월 중	

※ 상기 절차는 진행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용어설명]**

- 사업비: 지원금과 자기부담금(사업자부담금)을 합한 금액
- 지원금: 사업비 중 진흥원장이 주관기업에 지급하는 금액
- 자기부담금: 사업비 중 주관기업이 부담하는 금액(지원금의 10% 이상)

**- 관련규정**

- 본 사업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우리원의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과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콘텐츠지원사업 협약 및 수행관리지침, 콘텐츠지원사업 평가 및 심의지침에 의거함
- 우리원의 규칙과 지침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콘텐츠지원사업 관리규칙을 준용함
- 콘텐츠지원사업 관련 규정의 미숙지로 인해 발생된 문제는 수행기업(주관기업)에게 있음

**- 과제신청 및 관리**

- 본 사업의 공모 및 신청·사업관리·집행은 기획재정부 e나라도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운용됨

**- 사업비 사용 및 관리**

- 지원금은 선정평가 결과 및 예산심의에 따라 조정·삭감될 수 있음
- 사업비(지원금+자기부담금)는 반드시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집행되어야 하며, 과제책임자 또는 대표자 책임하에 관리되어야 함
- 수행기관은 지원금을 지급 받을 별도의 신규계정(계좌)을 개설해 관리하여야 함  
(불가피한 사유로 기존 계좌를 활용할 경우 통장 잔고 '0원'인 상태에서 운용해야 함)
- 본 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과제 사업비의 부가세는 인정하지 않음
- 지원금 분할지급(최초70%, 잔금30%)

**- 자기부담금 편성 및 집행**

- 지원금의 10% 이상 자기부담금을 필수 편성해야하며, 국고보조금지침 상 자기부담금 우선집행의 원칙에 따라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해야 함
- 2차 지원금 교부 전 사업비에 편성한 자기부담금 미소진 시 2차 교부금(30%) 지급 불가
- 자산취득비의 경우 국고보조금을 제외한 자기부담금으로만 편성 가능

**- 일반사항**

- 본 사업과 관련된 안내사항은 e나라도움 홈페이지 또는 진흥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
- 협약 이전 또는 이후에 필요할 경우 수행기관 현장점검이 이뤄질 수 있음
- 본 사업과 관련된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 협약해지, 지원금 회수,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본 사업 종료 이후 2년간 과제관리·점검 등 사후 성과관리가 진행됨
- 사업비 집행 시 가족, 임직원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 계열 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단체와의 내부거래는 금지하며, 위반내용 확인 시 전액 부적정 평가하고 정산 시 환수함
- 참여율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주관기업에 통보하여야 함
- 진흥원 제작지원사업 선정 기업 간 거래 불가
  - ※ 정부출연사업 등 과제 참여율이 100% 초과하는 경우
  - ※ 이중취업(타 업체 대표 이사 등)에 해당하는 경우
  - ※ 참여인력이 통상적으로 과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 기타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에 따라 사업운영에 따라 개인정보가 제공될 수 있음
- 본 사업을 통해 제작된 모든 결과물에는 전북콘텐츠기업지원센터 지원 문구 삽입 권장
- 상기 공고 내용은 우리원 진행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조정될 수 있음
- 우리원이 주관한 "2023 융복합 콘텐츠 제작지원사업" 선정기업의 참가는 불가 (사업자 및 대표자 기준)

# 4

## 신청안내

### ○ 신청기간

- 2024. 3. 18.(월) ~ 4. 1.(월) 16:00까지

※ 접수기간 외 접수 불가하니 마감시한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신청방법: e나라도움 신청 접수(진흥원 홈페이지 및 오프라인 불가)

- 진흥원 홈페이지 접속 후 해당사업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후 첨부서류와 함께 e나라도움 홈페이지 통해 접수

※ 별첨한 e나라도움 사용설명서 참조

### ○ 문의처

- 사업문의: 문화콘텐츠사업팀(063-282-2315, [rosie@jcon.or.kr](mailto:rosie@jcon.or.kr))

- 온라인접수문의: e나라도움 사용자 지원센터(1670-9595)

### ○ 제출서류

구분	번호	제출서류	제출 유의사항	제출 방식
과제신청서	①	과제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안내문 참조	PDF
	②	참여인력 이력		
	③	참여인력 과제참여 현황		
	④	신규인력 채용계획		
동의서	⑤	지원업체 참여제한 체크리스트	- 안내문 참조	
	⑥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참여인력 자필서명 필수	
	⑦	중복지원 여부 확인서	- 안내문 참조	
필수제출서류	⑧	사업자등록증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⑨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 제출일 기준 발행 1개월 미만의 것	
	⑩	표준재무제표	- 홈택스 발급 · 3개년(21~23년도) 표준재무제표 · 표준재무제표가 없을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으로 대체 (단, 법정 결산신고 기간을 지키지 않아 표준재무제표가 나오지 않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기타서류	⑪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미제출 시 평가지표에 따라 기본점수 적용	
	-	기타 증빙서류	- 증빙서류 · 가산점 증빙서류, IP사용 시 사용계약서 등	
<p>- 모든 사본 서류는 원본대조필 날인 필수</p> <p>- 제출된 서류는 우리 원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삭제·대체될 수 없음</p> <p>- 제출서류 내 허위 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평가 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p> <p>- 목록에 있는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상기 제출서류 이외 사업자 선정 및 협약 체결 시 최종 사업계획서, 인감증명서(법인), 사용인감계, 지원금 전용 통장사본, 법인등기부등본, 국세/지방세/4대보험 납세증명서, 중소기업확인서, 성희롱·성폭력 방지 등에 대한 서약서 등 추가 서류 제출이 요구됨</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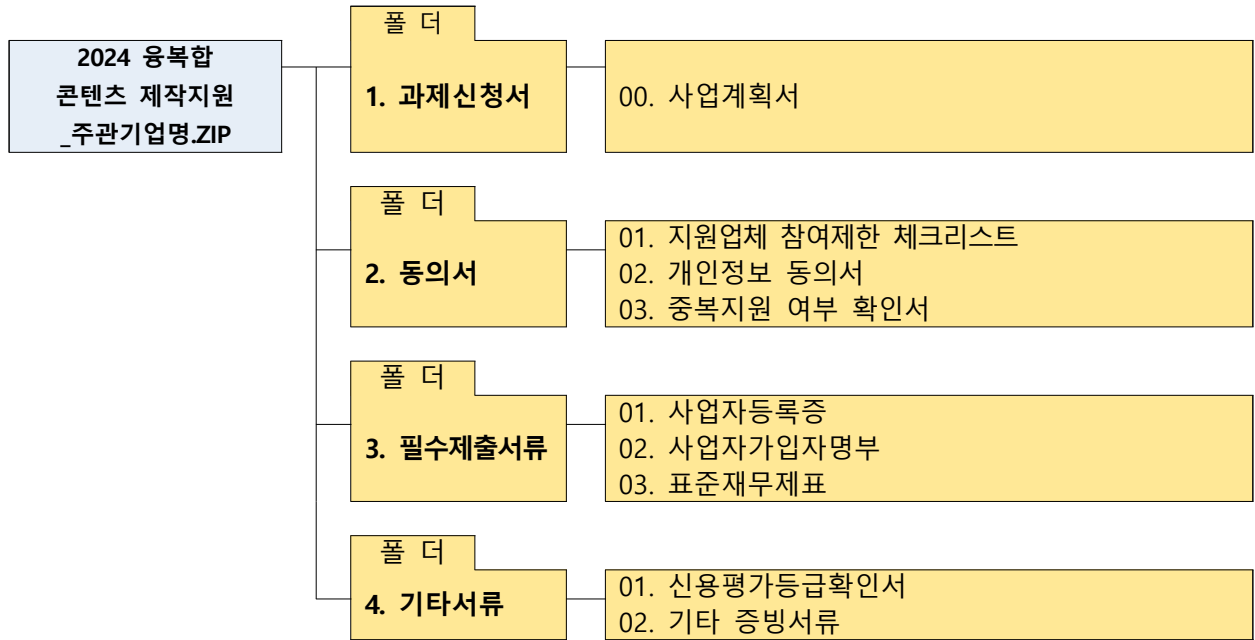
※ 서류작성 및 제출과 관련된 세부내용은 첨부된 사업 안내문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 ○ 서류제출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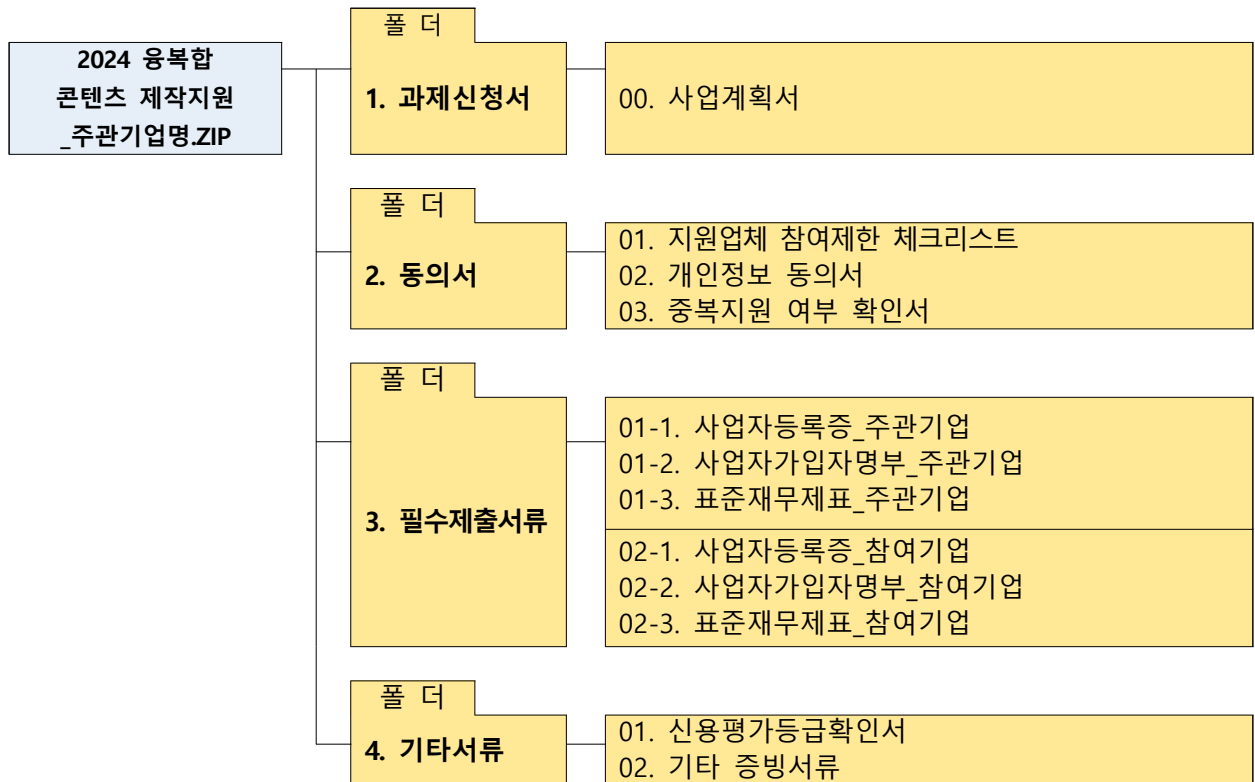
### - 서류 제출방법

- 모든 제출 서류를 1개의 파일로 압축하여 업로드 하여야 함
- ※ 압축파일은 50MB 이하의 용량으로 압축하여 업로드
- ※ 인감이 필요한 서류는 반드시 인감 날인 후 스캔하여 제출
- ※ 누락 및 오제출된 서류는 보완·수정이 불가
- 압축파일명: 2024 융복합 콘텐츠 제작지원사업\_주관기업명.ZIP

### · 압축폴더트리 [융합형]



### · 압축폴더트리 [융합상생형]



# 5

## 선정방법

### ○ 사업평가(안)

구분	평가사항	평가결과
①	서류평가	사전 적합성 검토 진행 후 서류평가
②	발표평가	사업비 확정 및 현장점검 기업 대상 선정
③	현장점검	사업장 유무, 근무환경, 참여인력 등
④	중간평가	수행과제별 진척률 점검
⑤	결과평가	과제 최종 수행점검(시연 등)

- 발표자료 제출: 서면심사 후 별도통보(PPT 제출)
- 심사위원 구성: 산·학·연·관 전문가 7명 내외 구성

### ○ 평가기준(안) ※ 평가지표는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적합성 검토

구분	검토사항	평가
①	제재사항 - 진흥원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별표 참조)	<input type="checkbox"/> 적합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②	구비서류 - 과제신청서 및 필수제출서류	<input type="checkbox"/> 적합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③	중복지원 - 중복지원 대상자 여부	<input type="checkbox"/> 적합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 - 서류평가 평가지표

- 신청과제 수가 모집규모의 3배 이내일 경우, 서류평가 없이 적합성 검토 후 발표평가 진행
-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를 2차 대면평가 대상으로 선정
- 평가위원 점수에 따라 모집규모의 3배수를 선발하여 2차 발표평가 과제로 선정
- 가산점은 신청과제가 모집규모의 3배수 이상인 경우 서류평가 적용, 모집규모의 3배수 미만인 경우 발표평가 적용

평가항목	세부항목	검토사항	배점	
수행기관 (20)	수행관리체계	-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수행관리체계 마련 여부	20	
	기업전문성	- 콘텐츠 제작 전문성 확보 및 참여인력 과제 수행가능 여부		
사업비 (20)	사업비 규모	- 실제 소요 사업비 규모의 적정성	20	
	사업비 조달계획	- 실제 소요 자부담금 조달계획의 구체성과 현실성		
과제기획력 (30)	과제이해도	- 목표 시장 및 과제내용의 사업목적 부합 여부	30	
	기획독창성	- 기획된 과제의 차별성과 참신성		
	기획완성도	- 기획안의 구체성, 현실성 확보 여부		
과제내용 (30)	경쟁력	- 시장의 타 콘텐츠와 경쟁하여 우위에 있는 정도	30	
	대중성(상업성)	- 일반 대중이 호기심을 느끼고 공감하는 정도		
	상용화 구체성	- 세부적인 상용화 계획(플랫폼 활용 등)		
<b>합 계</b>			<b>100</b>	
가산점 (3)	가산점	- 하위 가점사항 항목에 해당하는 콘텐츠 기업 ※ 해당 담당자에게 요청하여 확인증명서 발급 必 ※ 가산점은 하위 항목당 1점, 최대 3점까지 반영(항목별 중복 가능) ※ 전북콘텐츠기업지원센터, 전북콘텐츠코리아랩 지원사업은 23년도에 한하여 인정	3	
		ESG (최대 1점)		·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군 단위 기업 또는 공고일 이전 1명 이상 채용 기업
		전북콘텐츠기업지원센터 (최대 1점)		· 콘텐츠 엑셀러레이팅 지원사업 · 콘텐츠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 · 국외 콘텐츠 판로개척 지원사업 · 콘텐츠 맞춤형 인턴십 지원사업 · 콘텐츠 맞춤형 일자리 연계사업
		전북콘텐츠코리아랩 (최대 1점)		· 콘텐츠 창작 랩 제작지원 · 콘텐츠 창업 랩 제작지원

※ 가산점: 신청과제가 3배수 이상인 경우 서류평가에 적용, 3배수 미만인 경우 발표평가에 적용



- 발표평가 평가지표(융합형)

- 서류평가 통과 후 2차 대면평가에 참여한 과제 중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를 종합평가 대상으로 선정
- 발표평가는 주관기업 대표자에 한하며, 불가피한 사항이 있을 경우 담당자 문의 후 과제책임자 발표 가능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정량 평가 (5)	재무안정성 (5)		구분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신용평가 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
				B+, B0, B-	B-	B+, B0, B-	3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2
수행 기관 (30)	기업전문성	- 콘텐츠 관련 기술 보유 등 기업 전문성 확보 여부				30	
	기업역량	- 유사 과제 수행 및 시장 성공 경험					
	추진의지	- 수행책임자의 과제 수행 의지, 각오					
	과제 내용 (40)	기획우수성	- 융복합 콘텐츠로서 기획된 과제의 차별성과 독창성				40
		기획완성도	- 제작을 위한 기획개발의 구체성과 질적 완성 수준				
		과제경쟁력	- 시장의 타 콘텐츠와 경쟁하여 우위에 있는 정도				
기대 성과 (25)	사업화	- 과제 결과물의 사업화 및 2차 콘텐츠 발전 가능성				25	
	투자가능성	- 기대되는 매출규모 및 투자유치 가능성					
	경제적성과	- 상용화 계획을 통해 기대되는 콘텐츠 소비·향유 정도					

- 발표평가 평가지표(융합상생형)

- 서류평가 통과 후 2차 대면평가에 참여한 과제 중 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를 종합평가 대상으로 선정
- 발표평가는 주관기업 대표자에 한하며, 불가피한 사항이 있을 경우 담당자 문의 후 과제책임자 발표 가능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정량 평가 (5)	재무안정성 (5)		구분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신용평가 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
				B+, B0, B-	B-	B+, B0, B-	3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2
수행 기관 (30)	기업전문성	- 콘텐츠 관련 기술 보유 등 기업 전문성 확보 여부				30	
	기업역량	- 유사 과제 수행 및 시장 성공 경험					
	추진체계	- 주관기업과 참여기업의 역할 분배 및 업무의 명확성					
	과제 내용 (40)	기획우수성	- 융복합 콘텐츠로서 기획된 과제의 차별성과 독창성				40
		기획완성도	- 제작을 위한 기획개발의 구체성과 질적 완성 수준				
		과제경쟁력	- 시장의 타 콘텐츠와 경쟁하여 우위에 있는 정도				
기대 성과 (25)	사업화	- 과제 결과물의 사업화 및 2차 콘텐츠 발전 가능성				25	
	투자가능성	- 기대되는 매출규모 및 투자유치 가능성					
	경제적성과	- 상용화 계획을 통해 기대되는 콘텐츠 소비·향유 정도					

[별표 1]

## 제재대상 사유별 제재 조치(제40조제1항관련)

제재대상 사유(위반행위 유형)	제제조치(처리기준)
1. 보조금(지원금)을 지원받은 민간단체가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지원금) 횡령 가. 횡령사실이 처벌된 경우 나. 횡령사실이 법원의 판결 등으로 확정된 경우	가.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횡령액 반환조치, 향후 3년간 당해 단체 또는 보조(지원)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나. 횡령액 반환 조치 및 향후 4년간 당해 단체 또는 보조(지원)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2. 보조금(지원금)을 지원받은 민간단체의 임직원이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 횡령 가. 횡령사실이 처벌된 경우 나. 횡령사실이 법원의 판결 등으로 확정된 경우	가.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횡령액 반환조치, 향후 2년간 당해 단체 또는 보조(지원)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해당자 자체징계 요구 나. 횡령액 반환 조치 및 향후 3년간 당해 단체 또는 보조(지원)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해당자 자체징계 요구
3. 보조금(지원금)을 지원받은 민간단체 또는 민간단체의 임직원이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지원금) 유용	제1호 및 제2호의 위반행위 유형 및 처리 기준을 준용하되, 처리기준란의 지원 중단 기간은 각각 1년씩 감해서 처리
4. 사전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보조금(지원금)을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변경승인을 받아 보조금(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해당액 반환 및 향후 2년간 당해 단체 또는 보조(지원)사업에 대해 지원을 중단하거나 해당액의 3배 이상 2회 감액 지원
5. 정산결과 자체부담액을 부담하지 아니한 경우	향후 2년 이내 당해 단체 또는 보조(지원)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6. 위조·변조 등의 방법에 의한 증빙서류를 관리시스템에 허위로 입력하거나 이를 정산보고서 제출한 경우	해당액 반환 및 향후 1년 이상 3년 이내에서 당해 단체 또는 보조(지원)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7. 제1호 내지 제6호 외의 사항으로 민간단체 또는 그 임직원이 다음 사항에 해당된 경우 가. 보조금법 등 선정법을 위반한 경우 나. 교부(지원)조각을 위반한 경우 다. 문화체육관광부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라. 기획재정부의 예산·기금집행지침을 위반한 경우	보조대상단체 선정에서 제외, 해당액 반환 및 향후 1년 이상 3년 이내에서 당해 단체 또는 보조(지원)사업에 대해 지원을 중단하거나 위반행위년도 보조금(지원금) 기준으로 50%이상 2회 감액 지원
8. 제4조 제3항의 민간단체가 다음 사항에 해당된 경우 가. 5천만 원 이상의 과제가 연 2회 이상일 경우 나. 15억 원 이상의 과제를 3년 연속으로 수행한 경우 다. 2년간 보조금(지원금)의 총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한 경우	가. 당해 단체 또는 보조(지원)사업에 지원 불가 나. 향후 1년간 단체 또는 보조(지원)사업에 지원 불가 다. 향후 2년간 단체 또는 보조(지원)사업에 지원 불가
9. 기타 제재대상 사유(위반행위 유형) 가.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나. 수행계획서 중대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협약내용에 대한 중대한 위반을 하였을 경우 다. 지원과제의 중간평가 또는 결과평가 결과가 극히 "불량"인 경우 (다만, 지원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참여제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개발에 착수하지 않거나, 지원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마. 주관기업 또는 참여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를 게을리 한 경우 바. 사업비 정산에 불응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잔액의 반환을 지체하는 경우 사. 지원사업을 수행한 민간단체가 해당 과제에 대한 행정적 시정 및 권고, 지적의 조치 등을 받거나, 사후 관리가 극히 불량인 경우 아. 그밖에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관련 법령 및 협약을 위반한 경우	가.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 환수 나.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 환수 다.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 환수 라.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 환수 마. 기술료 해당액 환수 바.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 환수 사. 향후 5년간 보조(지원)사업에 지원 불가 아. 지원금 전액 또는 잔액 환수

※ 상기 8호, 9호의 사유별 제재 조치 및 처리는 '20년 1월 1일부터 시행. 단, 8호는 최근 2년 실적을 소급하여 적용.

※ 보조금(지원금)이라 함은 제2조에 따라 칭하는 모든 성격의 재원을 뜻함. (단, 8호에 한하여 칭하는 보조금(지원금)은 진흥원이 직접 지원한 보조금에 한함.)